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9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강일·차규근·김남근

민병덕 • 김용만 • 이기헌

박해철 • 이재관 • 강준현

박지혜 • 오세희 • 박범계

박용갑 · 김우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수명연장과 일자리 환경 변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근로소 득 외에 개인 소득원으로 금융자산 형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임.

실제,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의 금융자산 비중은 35.6%인데 비해, 미국은 71.5%, 일본은 63%, 영국은 53.8% 수준임. 특히, 부동산 자산 중심의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선진국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 형성과 비생산적 부동산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의 다변화, 고령화 등으로 개인 소득원의 다각화를 위

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를 위해 현재 저조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임. 국민들의 투자 성향, 자산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ISA, 즉 K-ISA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에 초석으로 삼고자 함(안 제91조의18, 제91조의24, 제129조의2 개정).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확대(안 제91조의18제1항, 제2항, 제91조의24)

현행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부여하지 않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9의 세율을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고, 납입금액 전체의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 확대 및 납부 방식 변경(안 제 91조의18제3항제5호)

현행 납입 한도가 연간 최고 2천만원, 최장 5년까지 "1억원"이 가능하던 것을, 첫해 최고 "2억 2천만원"을 한도로 연간 2천만원, 최장 5년까지 "3억원"으로 납입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 대상 확대(안 제129조의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 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 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 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업자등은"을 "신탁업자, 투자일임 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 및 제7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를 "근로소득 요건에 한 정한다)"로 한다.

2억원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 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 식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자등은"을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 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를 "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로 한다.

2억원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 제1호"를 "제87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 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 입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에 대한 과세특례) ①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 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 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 -----<u>소</u>득세를 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 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 <삭 제> 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 등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 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1. ~ 4. (생략)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누적 납입금액

- ④ (생 략)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 <삭 제>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 득세법 130조 및 제155조의 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야 한다.
-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 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 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u>제5항부터</u> <u>제7항까지</u>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 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 ②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호의 요건을모두 갖춘계좌(이하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연장하는 경우 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및금융투자소득(이하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비과세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

				<u>제5항</u>	및
제7	항				
(3)					
	근로소	·득 .	요건에	한정한	<u>다)</u> -
10	~ 12	(현호	생과 같	음)	
법률	제18	634호	. 조세	특례제한	법
	Ç	일부기	내정법률	<u>=</u>	
제012	조이 18	 (기)이	조 항 기	산관리기	레짐
에	내안	과세?	쿠데)(1	
				, F ,	ת נו
				<u>소</u> 득/	네들
<u>부</u> 고	<u> </u>	아니	<u>한다</u> .		

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 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 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 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 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 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다음 각 폭의 어드 하다[©] <u>해당하는 경우: 400만원</u>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 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 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 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 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 <u>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u>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 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 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 외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의 경우: 200만원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1. ~ 4. (생 략)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누적 납입금액

③
1. ~ 4. (현행과 같음)
5 <u>3억원</u>
2억원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④ (생략)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 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 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 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4)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u>
<u><삭 제></u>

<삭 제>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⑧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⑨ (생략)
-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 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 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 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 ③ (생 략)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제2항 및 제
<u>5항</u>
<u>.</u>
1.•2.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①
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저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 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 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 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 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 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 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 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 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 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 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등례의 제한) 제87조제3항, 제 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제91조	의24(과세특	특례 1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이	네 대형	한 특
례)				
_				<u>항제1</u>
<u>ই</u>				
1.9	. (현행과	가스)		
	(한 3위 2의2(저축지		위하	존세
	- /2\ / / 의 제한) -			
	-제91조의1	9		
		_ 		

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 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 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 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 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 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